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화 : 2094-0470~5



제1637호 2010. 4. 27

공 고

제2010-29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인사발령

기술직 7급 공무원 휴직(육아) 4
 사회복지 8급 공무원 휴직(육아) 4

회 보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대차대조표 5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474 / FAX: 2094-0479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서울특별시종량구 공고 제2010-297호

『서울특별시종량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종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량구청장

서울특별시종량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쓰레기 배출시간이 일반주택 지역과 서울시 방침에 의한 가로변의 배출시간이 달라, 그간 자체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오던 것을 규칙에 일치시키고, 조례개정으로 변경된 연탄재와 재활용품 배출 방법, 서울시 방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항목에 “껌”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주택가 및 가로변 쓰레기 배출시간.

- 일반주택가나 골목길, 뒷길은 정해진 요일의 18:00 ~ 20:00사이에 배출.
- 가로변은 정해진 요일 22:00 ~ 다음날 01:00사이에 배출.

나. 연탄재 및 재활용품 배출방법.

- 연탄재는 영업장에서 사용한 것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고, 일반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
-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 배출요일에 함께 배출.

다.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항목 추가.

- 과태료 부과 항목에 사용 후 버리는 껌을 추가하고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항목에도 껌을 추가하여 명시.

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기준지침에 의한 맞춤법, 띄어쓰기 등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131-701, 전화:022094-1932, FAX:02)2094-1939, E-mail : sjr@jungnang.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청소행정과(☎2094-19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기술직 7급 공무원 휴직(육아)

2010. 4. 25.

증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나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0.04.25.~2011.04.24.)	보건소 보건지도과	지방간호 주사보

사회복지 8급 공무원 휴직(육아)

2010. 4. 26.

증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박은경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0.04.26.~2011.04.25.)	상봉제1동	지방사회복지 서기

회 보

대 차 대 조 표

=====

제7(당)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제6(전)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단위:원)

자 산	2009년도 (당기)	2008년도 (전기)	부 채자 본	2009년도 (당기)	2008년도 (전기)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유 동 자 산	1,710,586,811	1,527,077,828	유 동 부 채	1,460,820,811	1,278,617,674
(1) 당 좌 자 산	1,710,586,811	1,527,077,828	1. 단 기 차 입 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75,289,687	1,013,619,584	2. 예 수 금	896,403,093	821,236,941
2. 단 기 금 융 상 품	248,460,154	416,720,826	3. 미 지 급 비 용	98,179,256	112,554,296
3. 수 용 가 미 수 금			4. 선 수 금		11,535,181
4. 대 손 총 당 금			5. 사업비정산반환금	459,361,280	327,068,415
5. 미 수 수 익	8,256,360	16,834,599	6. 미 지 급 금	6,877,182	6,222,841
6. 선 납 세 금	8,321,870	3,121,910	7. 유동성장기부채		
7. 선 급 금			8. 선 수 수 익		
8. 미 수 금	70,258,740	76,780,909	비 유 동 부 채		
(2) 채 고 자 산			1. 외 국 차 관		
1. 저 장 품			2. 은 행 차 입 금		
2. 기 타			3. 재 정 자 금		
비 유 동 자 산	234,000	1,539,846	4. 타 회 계 차입금		
(1) 투 자 자 산			5. 공 채		
1. 장 기 대 여 금			6. 임 대 보 증 금		
2. 보 증 금			7. 퇴직급 여 총당금		
3. 전신전화가입 권			8. 수 선 총 당 금		
4. 장기금융상품			9. 기 타 고정 부채		
5. 기타투자자산			부 채 총 계	1,460,820,811	1,278,617,674
(2) 유형자산	232,000	1,410,512	자 본	250,000,000	250,000,000
1. 토 지			1. 원 시 자 본 금	250,000,000	250,000,000
2. 입 목 물			2. 타회계출자자본금		
3. 건 물			3. 국고교부자본금		
4. 감가상각누계액			자 본 잉 여 금		
5. 차 량 운 반 구	14,537,540	14,537,540	1. 국 고 보 조 금		
6. 감가상각누계액	14,536,540	14,536,540	2. 도 비 보 조 금		
7. 공 기 구 비 품	117,011,160	138,802,128	3. 타 회 계 보 조 금		
8. 감가상각누계액	116,780,160	137,392,616	4. 시 설 분 담 금		
9. 수 탁 자 산	987,389,960	756,773,490	5. 공 사 부 담 금		
10. 감가상각누계액	638,419,185	476,648,469	6. 원 인 자 부담금		
11. 수탁자산취득보조금	348,970,775	280,125,027	7. 재 평 가 적립금		
12. 기타설비자산			8. 기 부 금		
13. 감가상각누계액			9. 기타 자본잉여금		
(3) 비 가 동 설비자산			이 익 잉 여 금		
1. 비가동설비자산			1. 이 익 적 립 금		
2. 감가상각누계액			2. 기 타 적 립 금		
(4) 무 형 자 산	2,000	129,334	3. 차기이월잉여금		
1. 영 업 권			(차기이월결손금)		
2. 창 업 비			수정후이월잉여금		
3. 개 발 비			(또는 결손금)		
4. 시 설 이 용 권			당기순이익(손실)		
5. 소 프 트 웨 어	2,000	129,334	자 본 조 정		
자 산 총 계	1,710,820,811	1,528,617,674	자 본 총 계	250,000,000	250,000,00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710,820,811	1,528,617,674